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3. 11.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고명욱 의원 외 7명(도하석, 박정환, 남현주, 강한곤, 정순욱, 황국주, 서보영)
- 발의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3. 11.)

2. 개정이유

-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달서구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8조)
-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(안 별표 5)
 - 배우자 출산 시: 10일 → 20일
 -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: 15일→25일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, 별표 1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입법예고(2025. 2. 26. ~ 3. 9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외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빈번한 업무 연락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어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(2025. 2. 11.)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18조는 근무시간 외에는 재난발생·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무분별한 연락, 업무지시 등을 자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,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,
 - 안 별표 5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, 저출산 극복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